제142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4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88년7월2일(토) 오후 2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대법원장(정기승) 임명동의의 건
2. 감사원장(김영준) 임명동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법원장(정기승) 임명동의의 건 ····· 1
2. 의사진행의 건 ····· 1
3. 대법원장(정기승) 임명동의의 건(계속) ····· 3
4. 감사원장(김영준) 임명동의의 건 ····· 4

(14시19분 개의)

○의장 김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법원장(정기승) 임명동의의 건

○의장 김재순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정기승)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에 정기승을 임명하고자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서 장경우 의원 김진재 의원 정해남 의원 정균환 의원 최봉구 의원 오경의 의원 백남치 의원 김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2. 의사진행의 건

(14시21분)

○의장 김재순 의사진행상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려야겠읍니다.

김광일 의원 통일민주당 소속의원이십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서면으로 신청해 오셨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의사일정을 제가 상정을 시켰읍니다.

또 감표위원까지 다 선출해 가지고 수고하시게 되었고 이제 투표 직전에 있는데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모처럼 의사진행발언을 서면으로 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괜찮겠읍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우선 드리겠읍니다.

○김광일 의원 통일민주당의 초선의원 김광일입니다.

초선의원이 되어 놔서 잘 몰라서 진행발언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또 실무 소위원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의안상정은 이 국회법 71조에 의해서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회법 71조2항에는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장께서는 국

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를 우선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있어야 그 다음 발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오늘의 이 의사일정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3대 국회가 화해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자고 하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제1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건의 처리를 처음부터 의장께서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 진행하신다면 앞으로 이 국회의 운영이 모두 위법하고 탈법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느냐 하는 그 근본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종식시키고 참된 민주화의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자고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자인 노태우 대통령이나 민정당이나 또 우리 야당들 및 모든 국민들의 일치된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삼권의 수장 중의 하나인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이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다가 동의요청을 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도록 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요청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특별한 반대 없이 모두의 승인을 받아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24시간도 되기 전에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에 바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법 71조2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원들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명백하게 지금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또 모든 국민들, 특히 사법부의 장을 정함에 있어서 사법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론을 분분하게 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야말로 충분히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단계에 가서 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소?」 하는 이 있음)

그런 뜻에서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근본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장께서 발언을 막지 아니하면 이 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의사진행입니다.

국회법 105조5항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안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지 대통령 동의요청안도 일반안건입니다. 이 안건을 토론이나 질의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라 하는 법률상의 제한은 없읍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저는 초선이라는 말을 그래서 했읍니다. 관행상 인사에 관한 문제는 토론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선례집을 찾아보았는데 다른 선례는 다 나와 있어도 그 선례집에 이런 것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사실상 관행으로서 이 인사에 관한 안에 대한 토론을 아니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법원장이라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할 때 국회에서 의견이 분분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질의도 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조항까지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본회의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야당안으로 제안한 바 있고 또 여당 측에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갑자기 그런 명문의 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고 또 신설된 청문회제도에 의해서 그 사람됨과 직무능력이라든지 적격성 여부를 청문회에서 적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는 양해하에 그 명문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 등을 놓고 볼 때 국민이 그야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동의에 요청된 두 사람에 대해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일반 국회의원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부 측에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 또 잠정적인 결정이었다, 이래서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과연 진의에

의한 추천인지 아닌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표결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한 가지는 국회법 71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안건은 어느 날짜에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 적합한가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다가 하다가 안 될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라도 의사일정에 올릴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로 만약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질의와 토론을 하자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과 일문일답 요청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발언자에 관계되는 말씀을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읍니다.

71조를 말씀하셨는데 71조에 의사일정 합의는 관례상 회기 초에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142회 국회는 구성 당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경우에는 운영위와 합의하지 못하는 그런 관례가 있읍니다.

이즈음 저희들이 매일매일 당일당일의 의사일정은 의사담당 부총무 그 회담에서 협의해서 저에게 알려 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의사일정에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

3. 대법원장(정기승) 임명동의의 건(계속)

(14시33분)

○의장 김재순 이상으로 처음 의사일정에 돌아가서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의사국장 진재훈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좌우 양쪽에서 하시면 되겠읍니다.

기표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의 뒷면 공란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하여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의원호명)

○의장 김재순 투표 도중에 한 말씀 드립니다.

투표방법은 비밀투표로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하자 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의원호명 계속)

투표가 늦다고 불평하는 의원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투표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결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신기하 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이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시는 것은 투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은 밖에 있는 분까지 투표하게 기다리게 할 예정입니까?)

(「조용히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빨리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종결해요 빨리……」 하는 이 있음)

들어가세요.

좀 장내를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끌어 나갑시다.

(○신기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차라리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나서 나중에 1시간…… 법적으로 해 주셔야지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부당하게 어떻게 참습니까?)

지금 사무국에서 투표가 다 끝나지 않았다니까……

(장내 소란)

잠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장내를 정리한 다음에 투표함을 막겠읍니다.

(○신기하 의원 단하에서 — 장내정리 때문에 투표함 폐쇄를 못 하는 것입니까?)

일단 할게요 들어가라고요.

(장내 소란)

의장은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어야……

(장내 소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지요. 투표가 완료됐느냐 안 되었느냐……

(장내 소란)

여러분! 잠깐 좀 정리해 주세요. 아니 투표를 종결선포 하더라도 질서가 있는 가운데에서 종결선포를 해야지……

(「의장!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왜 늦는지」 하는 이 있음)

설명을 하는데 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장내 소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좌석에 돌아가세요.

(「투표종결만 시키면 되는데 무슨 설명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종결할 테니까 여러분 조용해야 종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소……

의장이 사회할 때 실제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가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를 의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이 투표가 끝났다는 보고를 의장에게 이제 했읍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15시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9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정창화 의원 단하에서 — 국회 선례집에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공개로 투표한 것은 개표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읍니다.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1972년도 국회 선례에도 개표 도중에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본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번 국회법 개정 때 의장의 권한을 다 삭제해 버려가지고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감표위원 외에는 들어가 주세요.

(○정창화 의원 단하에서 — 의장!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하자가 되어서 재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읍니다.)

(장내 소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개표 도중에 두 분한테서 들어왔읍니다.

황명수 의원과 정창화 의원 두 분이 의사진행발언 통지가 왔는데 개표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줄 수가 없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투표수는 294매로써 명패수보다 1장이 적습니다.

명패수보다 적은 투표수 1장은 기권표로 처리토록 하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1표, 부 6표, 기권 134표, 무효 14표로서 대법원장 정기승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감사원장(김영준) 임명동의의 건

(15시31분)

○의장 김재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 김영준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에 김영준을 임명하고자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이 안건도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겠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읍니다.

○의사국장 진재훈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좌우 양쪽에서 하시면 되겠읍니다.

기표하실 때에는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투표에도 이름을 쓰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읍니다.

반드시 '가'나 '부'로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재하라고만 얘기하는데 뭐라고 기재하

나! ‘가’ 자 ‘부’ 자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는 이 있음)

기표하실 때에는 투표용지 뒷면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찬성하실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의원호명)

(○정창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투표행위는 무효입니다.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의장 김재순 전번의 표결 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비밀투표 방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비밀투표방법에 하자가 없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화 의원 단하에서 — 기표소에 들어가서 하도록 해 주세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투표는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투표하고 안 하고는 자유요, 기표하는 것도 자유요」 하는 이 있음)

(의사국장 의원호명 계속)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15시5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엽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6매입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96표 중 가 154표, 부 10표, 기권 131표, 무효 1표, 감사원장 김영준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산회)

○출석 의원 수(297인)